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첨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0년 9월 6일

나. 회부일자 : 2000년 9월 7일

3. 제 안 이 유

가. 향후 지역개발 수요와 갑작스런 재해 등 지방채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인 재정운영 도모

4. 주 요 골 자

가.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내에서 일정 액을 적립조성(안 제2조)

나. 기금은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도 사용(안 제3안)

다. 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고, 도금고 은행에 예치관리(안 제4조)

라. 기금에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기능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안 제 5조)

5. 검 토 의 견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검토한 바

- 지역개발 수요와 긴급 재해발생등으로 인한 지방채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중 20%를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인 재정운영에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으나

- 현재까지 회계별 지방채 채무현황 및 채무상환 현황
- 기금적립 비율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내로 정한 배경
-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려는 이유
- 예치 금융기관을 도금고로 한정한 사유등에 대하여

-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불임 :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2000. 5. 10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대책 강구지침(조례 준칙안)”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에 의하면
⇒ 지침은 조례제정 의무사항이 아님.
- ※ •조례제정 대상 : 헌법과 법률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해당부서 실무자는 조례제정 여·부가 행자부의 평가(10월)대상 이라 함

□ 지방채상환감체기금조례 우선 제정대상 자치단체(행자부 지침)

-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 단체 ⇒ 우리 도 3.44%
- 당해연도 지방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이상 단체 ⇒ 우리 도 11.3%
- 향후 채무상환원리금이 일정년도에 집중되어 당해연도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체
- 대규모 계속사업 추진으로 수개년간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여 향후 상환재 원확보에 부담이되는 단체
- 차임금이 단기 고리에 치중되어 원리금부담이 과중하거나, 재정 여력에 비해 부채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순세계잉여금 사용비율

- 채무상환비율 10%이상 - 20%미만 단체 :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 채무상환비율 20% 이상 - 30%미만 단체 :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 채무상환비율 30%이상 단체 :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